

14.11 30지선리
2000

가정폭력
가정폭력 → 이혼
가정폭력
불안으로
청소
폐쇄 → 2000

2000

가정폭력
이혼
가정
2000
2000?

제 장 여성장애인

제 조 차별금지

제1항 여성장애인은 고용, 교육, 이동, 의사소통, 정보접근,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이용, 문화, 체육, 사법행정·참정권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1)

제2항 장애를 가진 여아, 청소년, 노인 등 여성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생애주기에 따라 겪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아니 된다.2)

제3항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당하는 등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받아서는 아니 된다.

* 벌칙 98조 ② : 본 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는 자

제4항 사용자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에서 퇴직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2), 사내 보육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

* 벌칙 98조 ③ : 본 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는 자

제5항 교육책임자는 장애를 가진 여아와 청소년들에게 성인식 및 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학습 활동, 진로와 취업 교육 및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항 교육책임자는 장애를 가진 여아와 청소년들에게 성인식 및 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학습 활동, 진로와 취업 교육 및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와 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벌칙 ② : 본 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는 자

1) 현재의 법안 제2장 차별금지 중에서 10절에서 14절을 제외하고 “성별”이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절) 제7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 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절) 제17조 ② 장애인은 건축물, 시설 및 교통시설의 이용과 접근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4절) 제20조 ② 장애인은 보도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7절) 제28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를 개발하고 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8절) 제31조 ① 모든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관계없이 체육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불편 없이 체육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여성팀과 여장연은 위 각 조항에는 특별히 “성별”을 포함한 목적이 분명하므로 “성별”을 삭제하여서는 안되며, 각 실태조사에 의하면 차별행위는 같으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수치가 높게 나타나므로 “제 장 여성장애인”의 제1항을 존치시키고자 한다.

2)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차별금지대상에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6항 여성장애인은 성과 장애를 이유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및 성매매를 당하여서는 아니된다.³⁾

제7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제도 마련 및 통계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제8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

3) 폭력에 관한 관련법이나 본 법 폭력의 절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이나 성폭력 특별법에는 명백하게 장애를 이용한 성폭력임에도 사법부는 대가성 혹은 화간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에 의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다만 벌칙은 다른 관련법이 더 무겁게 다루고 있으므로 보다 섬세한 견해나 조언을 요한다.